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고용지위 변화¹⁾

노혜진*

본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해체를 전후하여 고용지위가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유사성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여성에게는 어떤 특성과 요인들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해체를 전후하여 9년의 시점을 추적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해체 3년전부터 매년 5%포인트씩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취업이 여성에게 결혼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바이다. 더불어 해체를 전후한 고용률의 증가폭은 빈곤여성에게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취업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해체를 전후하여 주당 평균 9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셋째, 해체를 전후한 여성의 고용지위 변화는 크게 네 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그룹은 해체 이후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유형, 분석기간 9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유형, 해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상태에서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유형,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유형이었다. 넷째,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속적 취업에 비해 해체후 불안정한 노동을 하거나, 혹은 해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더불어 여성의 개별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역시 지속적인 미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게 해체의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감소, 보육정책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1. 서론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이혼율은 2.3명으로서, 이것은 유럽 국가들의 조이혼율 평균이 1.9명임을 고려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Euro Stat, 2011).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이혼율이 높은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이혼율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인데, 한국은 지난 40여년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과 더불어 가장 크게 이혼율이 증가한 국가군에 속한다(김미숙, 2009).

결혼 이후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 경력이 단절되었던 많은 여성들이 결혼해체와 동시에 급격한 소득감소, 혹은 빈곤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McKeeber and Wolfinger, 2001; Manting and Bouman, 2004; Uunk, 2004; Avellar and Smock, 2005). 특히 가구소득의 감소는 해체 이전과 비교해볼 때 적게는 18%부터 크게는 42%까지 이르며, 이러한 빈곤위험과 소득감소는 해체 직후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김교성, 2008; 이현송, 2008;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박현선·정익중, 2012). 보다 구체적으로, 결혼해체를 경험

1) 이 논문은 2013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B5A01-030039]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한 여성가구주의 빈곤율과 빈곤깊은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두 배 가량 증가한다.

사실 많은 여성이 결혼 이후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결혼해체는 여성에게 가구 내 주요 생계부양자의 상실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소득변화나 빈곤위험,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을 위한 소득지원 확대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거나 혹은 빈곤위험을 예방, 개선하는 것 보다 근원적인 대안은 여성의 고용지속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해체 이후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위험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고용상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고용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연구는 주로 해체 이후 고용률과 취업역동, 그리고 그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우선 고용률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은 결혼해체 이후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Tamborini, Iams, & Reznik, 2012). 그러나 시점별로 구체화하면, 해체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고용률이 최고가 된다는 결과, 해체 당해연도에 고용률이 최고 수준이다가 이후 3년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 혹은 결혼해체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는 다양한 결과 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다룬 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해체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재취업을 통해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주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해체 이전년도(t-1)를 기준으로 3-5년 간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고용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한다. 더불어 재취업은 소득증가를 수반하는 원인이 되지만, 여성의 경우 해체 이후 임금노동을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위험의 상쇄 정도가 남성보다 낮고, 그로 인해 고용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nsen, Mortelmans, & Snoeckx, 2009).

다음으로 취업역동의 원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해체 이후 여성의 취업으로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중간학력이거나 건강이 좋은 경우, 해체 이전에 노동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 당해연도라는 시점이 강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 요인으로서 공적 보육정책 혹은 가족친화적 정책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해체 이후 여성의 취업가능성이 증가하였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Raeymaeckers, Snoeckx, Dewilde, and Mortelmans, 2008; Tamborini, Iams, & Reznik, 2012). 반대로 해체 이후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이혼 전 일하지 않은 기간이 길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해체 후 1년, 2년, 3년이라는 시점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취업역동과 원인을 분석한 것에서 나아가, 다수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근로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혼 후 소득감소를 최소화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Jansen, Mortelmans, & Snoeckx, 2009).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학력, 해체 전 고용상태였을 경우, 공식적인 보육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공식적인 보육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복지국가 지수가 높은 경우가 해체 이후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aeymaeckers, Snoeckx, Dewilde, and Mortelmans, 2008; Van Damme, Kalmijn, & Uunk, 2009).

한편 여성의 결혼해체와 고용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연구의 내용 역시 해체를 전후한 고용률의 변화에 국한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혜영·변화순·윤홍식(2008)의 연구에서 이혼 당시 54%였던 취업률이 이혼 후 83.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혜진·김교성(2008)의 연구에서는 해체 당해연도에 여성의 취업률이 해체 이전보다 증가하지만, 다음연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수완(2010)의 연구에서는 해체 1년후를 기준으로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변화를 보인 사례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화를 보인 사례가 11% 수준으로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은 해체를 기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지만, 일관적인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인 분석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분석의 시점이 해체 이전년도(t-1)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발생했을 재취업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국내연구의 경우 해체를 기점으로 한 고용률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함에 따라,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해체 이후에 취업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반대로 실업으로 이동하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이 해체를 전후한 9년의 기간에 걸쳐서 고용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소득감소와 빈곤

한국의 조이혼율은 2.3명으로서, 이것은 OECD국가 중 5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이혼율은 지난 40여년간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과 더불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군에 속한다(김미숙, 2009).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혼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최근들어 대졸자 집단에서 이혼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혼이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dard·Deschenes, 2005; Isen and Stevenson, 2010). 그러나, 이혼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혼이 인적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sen, Mortelmans, & Snoeckx, 2009). 한국의 경우 결혼 초기에는 저학력일수록 이혼위험이 높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서 역전현상이 나타나 고학력일수록 이혼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해봉, 2010).

혼인 상태는 여성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즉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과 비교할 때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 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그만큼 빈곤이나 배제에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해체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종단 연구로서 결혼해체 당해연도 혹은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설정하여, 해체 이후 여성이 경험

하는 소득감소나 빈곤,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하든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해체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적으로 가구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McKeeber and Wolfinger, 2001; Manting and Bouman, 2004; Uunk, 2004; Avellar and Smock, 2005; Andre, Bröckel, 2007). 시점을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빈곤에 대한 결혼해체의 영향은 장기적인 면보다 단기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해체 직후 1-2년이 되는 시점에서 가구소득이 급감하였다. 특히 재정적 상실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은 자녀가 있는, 나이든 실업상태의 중간학력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Jansen, Mortelmans, & Snoeckx, 2009). 중간학력 집단의 취약성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되는데, 저학력 집단에는 복지 수급으로 인한 재정적 보상이 있었을 것이고, 고학력 집단은 그들의 높은 인적자본으로 인하여 이혼의 부정적 소득효과를 최소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혼 전 소득의 회복기간으로는 상용직, 무자녀 여성은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 전체 가구소득이 이혼 전과 같아지려면 10.6년에서 13.4년이 소요되었고, 균등화 소득 측면에서는 4.4년에서 6.3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성은 총소득 측면에서 6.8-7.9년이 필요하고, 균등화 소득 측면에서는 단지 0.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성은 이혼 후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소득감소 혹은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을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방식으로는 여성이 주로 여성중심 일자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이고, 해체 이후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삶에 따라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소득을 버는 일자리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Gadalla, 2009). 최근 들어 여성 고용참여의 확대에 인하여 가구 내 여성의 소득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도 결혼해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dalla, 2009).

한편 결혼해체 이후 소득감소와 빈곤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이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소득,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의 5개 차원으로 측정된 사회적 배제의 수준 역시 해체 당해년도부터 계속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무엇보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특성 외에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연도라는 시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노혜진·김교성, 2008). 구체적인 소득감소액을 살펴보면,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여성은 다음연도부터 3년간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평균 가구소득이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359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감소하였으므로 나타났고, 비율로 환산할 때 이것은 18%에서 42%까지 이른다(이현송, 2008;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박현선·정익중, 2012). 이러한 감소에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상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체 당시 33%에서 해체 이후 72%로 급증하였다(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김수완, 2010).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 변화궤적을 살펴본 결과 소득의 초기치가 낮을 경우 이혼·별거 이후 소득이 더 급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정익중, 2012). 이와 같이 결혼해체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여성의 삶의 변화는 자산형, 근로소득형, 비공식 지원형, 재혼형, 배제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장은진·석재은, 2011).

2.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고용형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4분기를 기준으로 1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6.1%로서, 이것은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칠레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상황이며, OECD 평균인 62.6%에 비해 6%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배경의 핵심에는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생애사건들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모성기(30-39세) 고용율은 여전히 M자형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12).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여성의 전문직과 사무직으로의 진출이 증가하였지만, 동시에 단순 노무종사자 비중도 2000년의 11.2%에서 2010년에 16.8%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곧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여성 노동시장이 점차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오은진 외, 2012: 44).

특히 가사노동 수행과정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은 성별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서, 경력단절은 재취업시 4%에서 22%까지 임금 및 소득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11; 김종숙·이지은, 2012). 또한 일정기간 경력단절 상태에 있었던 여성은 계속 고용을 유지한 집단에 비해서 고용이 훨씬 불안정하고, 취업과 미취업을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이 경력단절 이전의 직종보다 훨씬 낮은 직종에 취업하는 특징을 보인다(김태홍 외, 2012).

그런데 문제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반된 상황, 즉 경력단절과 재취업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게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35-39세는 고용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낮은 시기이지만, 혼인 상태에서 볼 때는 조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해체 당시 미취업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더불어 해체 이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미취업상태에서 재취업을 급하게 시도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이 해체를 전후하여 고용형태의 변화 양상과, 이러한 변화의 영향요인, 그리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자녀양육과의 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다룬 기존 연구의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결혼해체 이후의 고용률 변화와 일자리의 특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학력 집단에서 고용률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별로는 해체 후 2년(t+2)이 되는 시점에 노동시장 투입 정도가 가장 크다는 결과도 존재하지만(Tamborini, Iams, & Reznik, 2012), 일하기로 한 결정이 해체 이후 너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고용률이 증가하나 이후 3년까지 계속 감소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Damme, Kalmijn, & Uunk, 2009). 반면,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고용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와(Mueller, 2005)와 오히려 감소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한다(Covizzi, 2008). 이와 같이 연구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첫째 해체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재취업을 통해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이혼 이후 고용변화의 양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여성친화적인 고용정책이

있는 국가에서는 해체 이후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지만, 소득관련 여성친화 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반대의 양상이 발견되었다. 한편, 해체 이후 여성이 진입하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여성은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재취업은 소득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해체 이후에 발생하는 빈곤 위험은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의해 상쇄되지만, 여성은 저임금으로 인해 이러한 상쇄 정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ansen, Mortelmans, & Snoeckx, 2009).

해체 이후의 고용률 변화와 일자리 특성을 다룬 국내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김혜영·변화순·윤홍식(2008)의 연구에서 이혼 전, 이혼 당해연도, 이혼 후의 세 시점별로 취업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혼 당시 54%였던 취업률이 이혼 후 83.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혜진·김교성(2008)의 연구에서는 해체 당해연도에는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지만, 오히려 다음연도에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혼 후 증가한 직업군은 단순노무직으로서, 이혼 당시 약 10-11%였던 수치는 이혼 후 전체 여성 취업자의 20%를 차지하였다. 더불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혼 당시와 비교해볼 때 이혼 후 자영업자와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약 38%에서 51%로 급증하였다(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한편,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임금노동을 다룬 질적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재취업을 당면한 경제적 궁핍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묘사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2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빈손으로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혼여성들은 변화된 노동시장에 적합한 기술 훈련을 배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당장의 생계부양을 위해 기술훈련에 뛰어들 시간적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현, 2012).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 힘들고, 하는 수 없이 적은 수입의 임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있어 주기만을 바라는 형편이었다(김혜선·김은하, 2010).

둘째, 결혼해체와 취업 역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주로 고용이 이혼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해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소수의 연구들도 존재한다. 해체과 취업 역동 간의 관계는 각 시점별 취업 교차표를 통한 분석과, 생존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로 구성된다. 우선 교차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체를 전후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은 70-80%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시장 진입비율은 9.2-10.4%, 노동시장 탈퇴 비율은 4.4-4.7%였다(Tamborini, Iams, & Reznik, 2012). 한편 남성은 결혼해체 이후 고용률이 7%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eller,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직 여성 중 36%가 해체 이후 1년 이내에 취업을 하고, 13%가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대졸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 혹은 중간 학력이거나 건강이 좋은 경우, 해체 이전에 노동경력이 있는 경우였다. 또한 부수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복지 수급자격이 박탈됨으로 인해 취업이 증가하였고, 이혼 당해연도라는 시점 역시 취업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었다. 그 외에 국가적 맥락으로서 공적 보육정책 혹은 가족친화적 정책이 발달되어 있을수록 해체 이후 취업가능성이 증가하였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Raeymaeckers, Snoeckx, Dewilde, and Mortelmans, 2008; Tamborini, Iams, & Reznik, 2012). 한편, 해체 이후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이혼 전 일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척과 동거하는 경우, 그리고 이혼후 1년, 2년, 3년이라는 시점이었다. 그 외에도 국가의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관대할수록, 일자리가 적을수록 해체 이후 취업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해체와 취업의 역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해체전후 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분석하고 있는데,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퇴직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Covizzi, 2008)와 감소한다는 연구의 결과가 혼재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가족 양립이 어려움으로 퇴직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임금노동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Tamborini, Iams, & Reznik, 2012).

한편, 결혼해체와 취업역동을 다룬 국내연구는 매우 소수일뿐만 아니라, 주로 교차표를 통해 취업 역동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수완(2010)의 연구에서는 해체 1년후의 시점에 미취업에서 취업으로의 변화를 보인 사례와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변화를 보인 사례가 11%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혜영 외(2008)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체 1년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42%로 가장 많았고, 직업을 새롭게 획득한 사례는 40%였다. 그러나 직업을 상실한 사례도 8% 수준이었고, 계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도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취업 역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취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혼전 취업과 이혼 당시 취업 모두 빈곤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 취업의 경우에만 이혼 후 빈곤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여성 취업의 지속성 여부가 가구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김혜영 외, 2008).

셋째, 결혼해체는 불가피하게 여성의 소득감소를 야기하고, 이러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서 많은 여성은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거나, 혹은 장시간 근로라는 전략을 채택한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소득 측면에서 여성은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므로써 이혼 후 소득을 상당부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ansen, Mortelmans, & Snoeckx, 2009). 그리고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해체 이후의 소득감소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중간교육수준의 남녀와 고학력 여성, 그리고 근로시간을 늘리기 어려웠던 집단으로서 고령자와 부모집단에게서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고임금 남성에게서 이러한 효과가 낮은 것은 그들이 이미 해체 이전부터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면, 해체 전 취업여성의 20%가 근로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17%는 감소시켰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국가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Raeymaeckers 외(2008)의 연구에서는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유자녀 여성이 해체 이후 근로시간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를 전후한 유자녀 여성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남부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주의 국가는 짧았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고학력, 해체 전 고용상태였을 경우, 공식적인 보육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공식적인 보육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복지국가 지수가 높은 경우였다(Raeymaeckers, Snoeckx, Dewilde, and Mortelmans, 2008; Van Damme, Kalmijn, & Uunk, 2009). 반대로 이혼전 근로시간이 길거나 저소득이었을 경우, 해체 시 연령이 높고 5세 이하의 자녀가 많을수록 해체 이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해체와 근로시간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체를 기점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고용역동이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에 대해 김순남(2009)의 연구에서는 “항상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입장이었는데, 자신이 물건을 파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성의 변화된 삶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득감소의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체 이후 계속적으로 무직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다룬 질적 연구에서는 이혼여성에게 양육의 실패는 모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것은 이전에 발생한 결혼의 실패에 덧입혀져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김정현, 2012; 노혜진, 2012). 그로 인하여 이혼여성들은 공식, 비공식 보육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소득이 보장되는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직업보다는, 오히려 자녀 돌봄을 손쉽게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노동활동범위를 스스로 제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성 이데올로기는 현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전략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김혜선·김은하, 2012).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여성의 고용상태는 해체 이후의 소득감소를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해체 이후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빈곤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혼인기간 중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여성은 결혼해체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빈곤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 노동 및 자녀양육의 책임 등으로 인하여 임금노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체 이후 여성의 빈곤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고용상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이 수행된 국내연구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

본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이 해체 3년 전(t-3)부터 해체 이후 5년(t+5)까지 9년간 노동시장에서의 진입여부와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고용형태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차부터 1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동패널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은 지난 한 해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다음 해의 그것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로 인해 실질적인 분석의 기간은 2차년도 자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을 추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모든 개인 데

이더에서 지난 1년간 별거 혹은 이혼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례를 추출하였다. 10차년도까지로 국한한 이유는 본 연구가 해체 이후 5년까지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차년도에 해체가 발생했을 경우 15차년도가 해체 후 5년이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출된 사례 중에서 연령이 60세 미만인 사례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각 차수마다 추출된 개인 사례들을 모두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 분석인 사건배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의 정보가 각 시점마다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9개 시점별 취업여부와 고용관련 특성에서 결측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에 결측치가 발생하는 시점의 정보를 직업력 데이터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시점 중에서 4개 이상의 결측치가 존재하는 사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결측치가 있는 사례들의 처리방식은 다중대체(multiple imputation)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중대체는 결측값을 모두 유사관측값으로 대체한 자료셋을 여러 벌 만들어 분석한 다음 결과들을 통합함으로써 추정치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허명희, 2009). 결측값을 대체한 자료셋 5개를 도출하였고, 그 중에서 원자료의 기술통계 결과와 차이가 가장 적은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은 여성 112명, 남성 107명이다.

2.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결혼해체를 전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양상과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유형은 고용여부를 중심으로 취업과 미취업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진입과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 가구, 그리고 해체 이전 노동시장 특성을 중심으로 6가지 변수로 구성하였다. 우선 개인적 특성에는 연령과 교육수준 변수를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가구 특성에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체 이전년도($t-1$)를 기준으로 빈곤여부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구 특성으로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 동거여부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해체 전의 고용여부를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노동시장 진입 패턴을 통제하였다. 또한 여성의 개별 소득수준 변수도 포함하였다. 이 때 9년간 여성의 평균 개별 소득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미취업 기간이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해있는 시점만을 추려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고용여부	취업 / 미취업
	연령	세
독립변수	교육수준	교육년수
	개별임금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벌어들인 개별임금의 평균액
	해체 전 고용상태	취업 / 미취업
	해체 전 빈곤여부	비빈곤 / 빈곤
	해체 전 자녀	자녀있음 / 자녀없음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선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개인·가구특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동일한 경험을 한 남성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해체 전후 9년간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건배열분석은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방법론으로서,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온 경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건배열은 시점(timing), 순서(ordering), 그리고 활동기간(duration of activities)이 고려된 요소목록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목록은 고용상태나 혼인상태 같은 어떤 지위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박경하, 2011). 결국 사건배열 분석은 대상을 분류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일련의 사건배열들 간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적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Brzinsky-Fay, Kohler and Luniak, 2006). 사건배열분석은 배열 간의 거리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거리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이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건배열을 다른 배열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거리 계산에 기초하고 있다(Abbott, 1995; 한준, 2001).

다음으로 활용한 분석방법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다. 최적일치법을 통해 두 사건배열들 간의 거리값이 구해지면 이를 기초로 유사한 사건배열들을 군집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군집분석의 방법 중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때 적정 유형의 개수를 선택하기 위해 Fseudo-F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건배열분석을 통해 도출한 군집을 기반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여부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서열화되어 있지 않고 3개 이상의 질적변수로 되어있을 때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는 사건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STATA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그 외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과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해체를 기준으로 한 각 시점별 고용률과 종사상의 지위, 노동시간 등 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체 시점을 기준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수준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임금과 빈곤율,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월평균 개별임금은 66만원으로서 남성의 절반 수준이고, 빈곤율은 37%로서 남성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결혼해체를 경험하게 되면, 해체 당해년도부터 빈곤이 급증할뿐만 아니라, 해체년도라는 시점 자체가 빈곤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상응하는 부분이다(노혜진·김교성, 2008). 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해체 당해년도에 여성의 취업률은 71.4%이고, 남성은 82.2%로 나타났다. 약 43%의 여성이 상용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직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판매서비스직에 치우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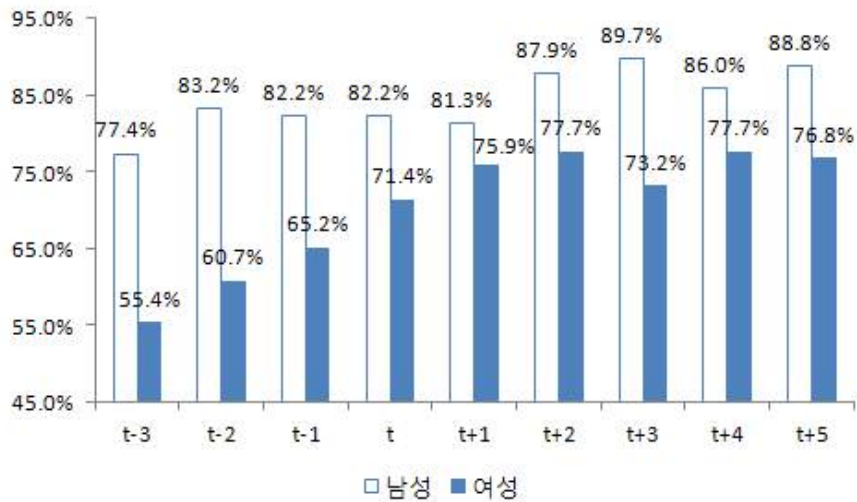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특성이 결혼해체를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 시점, 즉 노동패널 10차년도 자료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하지 않은 기혼여성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 고학력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해체라는 사건이 계층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집중되고 있다는 국외연구 결과와 상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Isen and Stevens, 2010). 또한 기혼여성의 빈곤율은 8.4%이고, 자가 소유비율은 63.2%로 나타났는데, 특히 빈곤율의 경우 결혼해체 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성 내부의 격차는 결혼해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남성과의 차이에서 나타난 성별격차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용률은 기혼 여성이 48.1%로 결혼해체 여성보다 23% 포인트 낮았으며, 그에 따라 월평균 개별 임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건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볼 때, 고용 상태에 있으나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과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해체시점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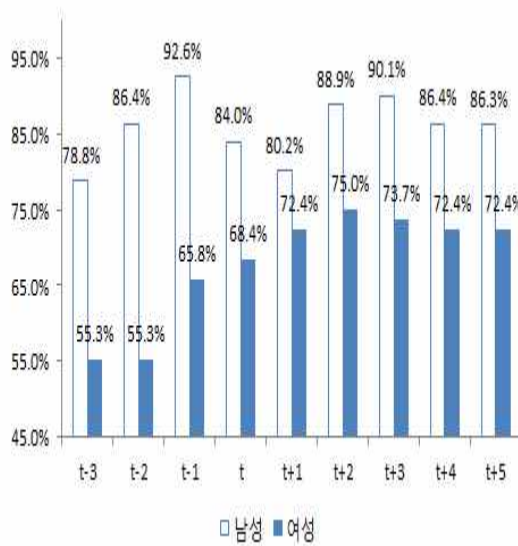
	여성 (N=112)	남성 (N=107)	비해체 기혼여성 (N=2,983)		여성 (N=112)	남성 (N=107)	비해체 기혼여성 (N=2,983)	
연령	41.4	42.3	42.5	상용직	48(42.9)	39(36.4)	665(22.3)	
	중졸 이하	41(36.6)	36(33.6)	827(27.7)	종사상 임시일용	14(12.5)	22(20.6)	245(8.2)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8(51.8)	48(44.9)	1267(42.5)	지위 고용자영	18(16.1)	27(25.2)	525(17.6)
	대졸 이하	11(9.8)	21(19.6)	823(27.6)	미취업	32(28.6)	19(17.8)	1548(51.9)
	대학원 이상	2(1.8)	2(1.9)	66(2.2)	전문직	12(10.7)	13(12.1)	
소득	개별임금	66.4	121.2	52.5	사무직	8(7.1)	6(5.6)	
빈곤	빈곤율	36.9	24.3	8.4	판매서비스	39(34.8)	10(9.3)	
취업 여부	고용률	71.4	82.2	48.1	직종 기능장치	12(10.7)	41(38.3)	
입주 형태	자가	33(29.5)	45(42.1)	1886(63.2)	단순노무	9(8.0)	18(16.8)	
	자가 외	79(70.5)	62(57.9)	1097(36.8)	미취업	32(28.6)	19(17.8)	1548(51.9)

다음으로 결혼해체를 기준으로 해체 3년 전(t-3)부터 해체 이후 5년(t+5)까지, 총 9년 동안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을 분석하였다. 앞서 <표 2>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고용률은 해체 당시 71.4%로서, 이 수치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48.1%였던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의 고용률은 해체 3년 전 55.4%에 불과하던 것이 이후 매년 5% 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에게 취업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상응하는 부분이다(Van Damme, Kalmijn, & Uunk, 2009). 해체 3년전부터 해체 이후 1년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증가하던 고용률은 해체 이후 2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75% 안팎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 해체 후 2년(t+2)을 기준으로 이전보다 약 5% 포인트의 상승을 보이기는 하지만, 시점별로 여성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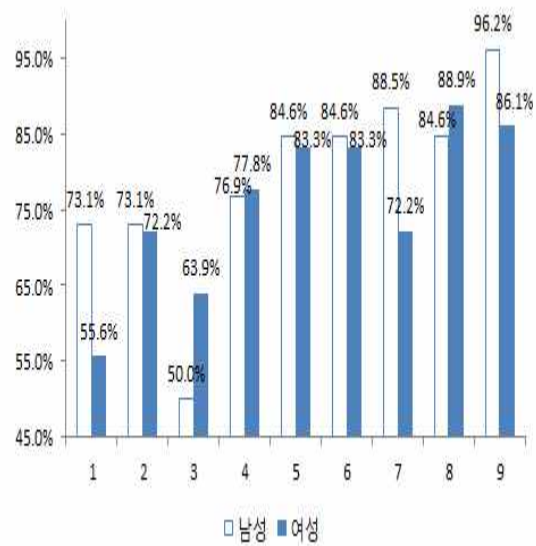


<그림 1> 시점별 고용률

취업은 많은 적든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성이 취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결혼해체라는 사건뿐만 아니라, 소득의 필요성, 즉 빈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체 전년도(t-1)를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시점별 고용률을 분석하였다. <그림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해체 전 빈곤했던 여성들이 해체를 전후하여 고용률이 약 30% 포인트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빈곤여성의 고용률은 결혼해체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갑자기 감소했다가 해체 후 4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체 전에 빈곤하지 않았던 여성은 빈곤했던 여성보다 해체를 전후한 고용률 증가의 폭이 약 17% 포인트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남성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해체 전 빈곤했던 남성의 고용률 증가폭이 빈곤하지 않았던 남성보다 컸다.



<그림2> 이혼전 비빈곤가구의 고용률



<그림3> 이혼전 빈곤가구의 고용률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이후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 전략으로서 여성들이 근로 시간을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한다(Jensen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시점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측정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주당 40시간 안팎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성은 해체 이전 26-27시간을 근무하다가 해체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약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해체 후 2년(t+2)에 40시간으로 정점을 찍은 후 다시 36시간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다. 이를 통해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이 해체 이후 주당 평균 9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시점별 주당 임금노동 시간

(단위: 시간)

		t-3	t-2	t-1	t	t+1	t+2	t+3	t+4	t+5	평균
전체 집단	남성	37.2 (26.5)	39.5 (25.8)	39.2 (24.1)	39.8 (24.9)	38.3 (24.7)	42.9 (24.6)	40.0 (22.5)	39.3 (22.3)	39.8 (21.2)	39.5 (24.1)
	여성	26.8 (27.7)	27.6 (25.9)	31.7 (27.0)	35.0 (26.8)	35.9 (26.6)	39.6 (26.1)	34.1 (25.5)	36.9 (24.4)	36.4 (24.6)	33.8 (26.3)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번에는 시점별 가구소득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득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표 4>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가구의 총소득이 시점을 막론하고 2천만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체를 전후하여 약간의 감소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해체 3년 후부터는 3년전의 소득을 넘어서

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해체 3년 전의 가구총소득을 해체 5년이 지나서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총소득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가구 내의 구성원 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구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체 3년 전 시점에서는 성별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해체 2년전부터 성별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해체 당해년도에는 남성의 가구소득이 여성보다 28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해체 2년전부터 어떠한 맥락에서 성별에 따른 가구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데이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시점부터 실질적인 별거로 인하여 가구소득이 다른 것인지, 혹은 배우자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체 2년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성별 가구소득의 차이는 해체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다시 유사해진다. 이것은 여성가구의 소득 증가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남성가구가 해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3년간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성과 다르게, 여성가구주 가구는 해체 이후 어떻게 매년 가구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여성의 개별 소득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발생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표 4> 시점별 가구 중위소득

(단위: 만원)

		t-3	t-2	t-1	t	t+1	t+2	t+3	t+4	t+5	평균
균등소득	남성	793.6 (762.3)	939.3 (719.3)	852.0 (711.8)	1,028.8 (1,033.0)	1,080.0 (1,188.4)	1,118.9 (1,756.9)	1,301.4 (1,368.1)	1,309.4 (1,543.7)	1,317.3 (1,185.3)	1,060.0 (1,228.6)
	여성	801.5 (802.2)	797.6 (777.7)	798.0 (1374.8)	748.2 (829.4)	802.9 (776.0)	933.3 (765.3)	1,131.1 (1,891.8)	1,159.5 (941.0)	1,356.6 (1,198.2)	943.4 (1,130.9)
총소득	남성	2000.0 (1446.1)	2152.0 (1602.9)	1960.0 (1461.7)	1934.0 (1514.3)	1824.0 (1893.3)	1938.0 (3668.6)	2186.0 (2168.1)	2210.0 (2865.1)	2316.0 (2066.7)	2000.0 (2230.3)
	여성	1935.0 (1877.9)	1915.0 (1783.5)	1491.0 (3315.3)	1200.0 (1423.6)	1300.0 (1315.9)	1500.0 (1403.7)	1810.0 (3579.3)	1589.0 (1469.5)	1720.0 (2130.7)	1600.0 (2207.8)

이에 해체를 전후하여 시점별 여성의 개별 소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5>). 중위값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은 모든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개별 소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3년전 개별소득이 19만원에 그치던 여성은 매년 소득이 소폭 증가하여 해체 후 5년이 되는 시점에는 9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3년 전(t-3)과 해체 후 5년(t+5)의 소득격차는 거의 5배에 달한다. 한편, 남성은 해체 3년 전부터 해체 1년 전까지 매년 약 15만원씩 개별소득이 증가하다가 해체 당해년도에 93만원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시점 중에서 해체 당해년도(t)와 다음해(t+1)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체 2년 후(t+2)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시점별 개별 임금(전체 집단)

(단위: 만원)

		t-3	t-2	t-1	t	t+1	t+2	t+3	t+4	t+5	평균
남성	평균	80.4 (75.2)	101.6 (85.6)	111.3 (93.9)	121.2 (164.3)	131.5 (178.7)	161.7 (221.9)	150.9 (155.4)	158.3 (132.9)	167.8 (143.8)	131.7 (148.5)
	중위	73.0	84.0	100.8	93.6	95.0	124.3	132.0	137.6	135.0	105.3
여성	평균	38.1 (52.2)	48.9 (65.8)	52.9 (57.6)	66.4 (64.6)	78.7 (74.8)	87.6 (79.6)	95.3 (113.6)	105.6 (104.9)	106.4 (102.8)	75.6 (85.4)
	중위	19.5	35.5	51.1	63.9	75.6	85.0	84.0	95.0	97.0	67.2

그런데 이와 같이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개별소득은 해체를 전후하여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이 변화하기 때문에 고용률 증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해체로 인하여 개별 소득액이 변화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개별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례만을 추출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6>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비교해볼 때, 중위소득이 15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여성은 해체 3년전부터 해체 당해년도까지 중위소득이 50만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해체 2년 전에만 67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해체 다음년도 중위소득이 69만원으로 증가하다가, 해체 3년후에 114만원으로 급증한다. 그러나 해체 4년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남성은 매년 꾸준하게 실제 개별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시점별 개별 임금(실제 개별임금 보유 집단)

(단위: 만원)

		t-3	t-2	t-1	t	t+1	t+2	t+3	t+4	t+5	평균
남성	평균	104.2 (69.6)	122.1 (79.3)	135.4 (86.3)	147.4 (170.3)	161.8 (185.5)	184.1 (227.9)	168.2 (155.0)	184.1 (125.6)	189.3 (138.7)	156.3 (149.4)
	중위	87.4	103.2	109.8	115.5	126.0	137.7	137.4	159.0	150.0	126.0
여성	평균	71.0 (52.4)	80.9 (67.7)	81.1 (52.8)	93.3 (57.9)	104.0 (68.9)	112.7 (72.9)	130.6 (114.3)	135.9 (100.2)	138.9 (96.2)	107.8 (83.2)
	중위	52.4	67.7	52.8	57.9	68.9	72.9	114.3	100.2	96.2	83.2

2. 결혼해체 이후의 고용형태 변화 - 사건배열분석 결과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고용형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건배열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더불어 각 유형별 집단의 간략한 특성을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4개 유형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각 유형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유형 1의 경우, 분석사례 중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특성으로는 해체 이전에 주로 미취업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해체 이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9년의 분석 기간 전체 중에서 임금노동을 했던 기간이 평균 5.13년인데, 해체 시점 이후의 근로기간이 4.17년이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해체를 기점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네 개 집단 중에서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체 당시 아동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약 45%로서, 네 개 집단 중 가장 크다. 더불어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형1집단은 해체후 불안정한 취업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유형은 9년에 걸친 분석기간 중 거의 모든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2는 전체 분석사례 중 45.5%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 중 절반의 여성이 유형2의 특성, 즉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시점에서 취업상태임을 함의한다. 유형 2가 분석기간 중 거의 모든 시점에서 취업상태인 것은 <표 8>의 취업기간에서도 다시 확인되는데, 9년의 분석기간 중 평균 취업기간이 8.6년이었고, 해체 당해연도부터 이후 5년까지 총 6년의 기간 중에서도 평균 5.8년 동안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여성의 고용률이 50%에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형2와 같이 거의 모든 시점에서 취업상태에 있고, 이러한 사례가 결혼해체를 경험한 전체 사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혼해체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개별소득 수준이 다른 유형의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장시간 근로를 기반으로 획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취학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형2집단은 취업지속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유형 3 역시 앞서 살펴본 유형1과 마찬가지로, 해체 이후 주로 취업을 하지만, 1-2년의 실직 기간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유형이 유형1과 가지는 차이는, 해체 이전으로서, 유형 1이 해체 이전에 주로 노동자 지위를 가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유형 3은 해체 이전 노동자와 전업주부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형3은 전체 유형 중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고,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체를 기점으로 6년동안 관찰한 취업기간은 평균 5.2년으로 유형2에 견줄 정도로 긴 편이다. 그러나 전체 분석기간 9년 중 평균 취업기간이 7년인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취업은 주로 결혼해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체 당시 가구소득이 가장 낮았으며, 유형2와 동일하게 해체이후 주로 취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2보다 개별소득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형3집단은 지속적인 불안정 노동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유형 4의 가장 뚜렷한 특성은 거의 전기간에 걸쳐서 비경제활동을 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는 전체 분석사례 중 15%에 불과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해체 당시 가구소득이 높은 편이다. 더불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가장 낮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형4집단은 미취업 지속형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이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절반 정도가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분석의 전기간에 걸쳐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분석사례의 약 27%를 차지하는 여성은 해체 이전에 주로 임금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체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진입과 탈피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체 이후 6년의 분석기간 중 평균 2년 정도의 실직기간을 경험하는 특성이 있다. 그 외에 약 13%의 여성이 해체 이전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다가 해체 이후 주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고, 나머지 약 14%의 여성은 해체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형1(해체후 불안정 노동형)과 유형3(지속적인 불안정 노동형)의 경우 해체 당시의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평균연령이 낮은 편이며, 미취학 아동과 동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 해체 이후에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탈피를 반복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맥락과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표 7> 고용여부 배열특성(n=112)

	총 배열	N	시간경과 배열	N
유형1 “해체후 불안정 노동” (n=29)	2-2-2-1-1-1-1-1-1	7	2→1	9
	1-1-2-2-2-2-1-1-1	2	2→1→2	6
	2-1-1-1-1-2-2-2-2	2	1→2→1	5
	2-2-2-1-1-1-2-1-1	2	2→1→2→1	3
	1-1-1-1-1-1-2-2-2	1	2→1→2→1→2→1	3
	(중간결과 생략)		(중간결과 생략)	
유형2 “지속적 취업” (n=51)	1-1-1-1-1-1-1-1-1	32	1	32
	2-1-1-1-1-1-1-1-1	7	1→2→1	11
	1-2-1-1-1-1-1-1-1	4	2→1	7
	1-1-1-1-2-1-1-1-1	2	1→2	1
	1-1-1-2-1-1-1-1-1	2		
	(중간결과 생략)			
유형3 “지속적 불안정 노동” (n=15)	2-2-1-1-1-1-1-1-1	4	2→1	4
	2-1-1-1-1-1-2-1-1	2	2→1→2→1	4
	1-1-1-1-1-1-2-2-1	1	1→2→1	3
	1-1-1-1-2-1-1-1-2	1	1→2→1→2→1	3
	1-1-1-1-2-1-2-1-1	1	1→2→1→2	1
	(중간결과 생략)			
유형4 “지속적 미취업” (n=17)	2-2-2-2-2-2-2-2-2	9	2	9
	2-2-2-2-2-2-1-1-1	2	2→1→2	3
	1-1-1-2-2-2-2-2-2	1	1→2	2
	1-2-2-1-2-2-2-2-2	1	2→1	2
	1-2-2-2-2-2-2-2-2	1	1→2→1→2	1
	(중간결과 생략)			

1: 취업 2: 미취업

<표 8> 각 유형별 특성

	유형1 “해체후 불안정 노동” (n=29)	유형2 “지속적 취업” (n=51)	유형3 “지속적 불안정 노동” (n=15)	유형4 “지속적 미취업” (n=17)	전체 (n=112)	
교육수준	11.14	10.67	11.53	9.53	10.73	
연령	40.52	41.37	36.67	47.18	41.4	
근로기간	분석기간	5.13	8.62	7.00	0.94	6.33
	전체	4.17	5.88	5.20	0.47	4.52
빈곤경험	분석기간	3.41	2.02	3.40	2.29	2.61
	전체	2.44	1.27	2.20	2.00	1.81
해체당시 가구구성	자녀있음	48.3	45.1	66.7	35.3	47.3
	아동있음	44.8	27.5	40.0	41.2	35.7
해체당시 가구소득	미취학아동 있음	27.6	13.7	26.7	11.8	18.8
	가구소득	899.6	1257.9	819.2	1259.3	1108.4
개별소득	t-3	27.9	82.1	31.3	5.6	49.5
	t-2	30.2	95.7	63.2	9.4	61.5
	t-1	32.0	99.1	77.2	5.6	64.6
	t	58.3	111.0	84.7	5.7	78.3
	t+1	78.6	119.2	113.9	0	90.0
	t+2	85.1	129.0	124.8	0	97.5
	t+3	100.6	133.6	100.9	20.0	103.2
	t+4	105.4	148.2	104.4	15.0	111.0
	t+5	101.9	138.6	128.0	15.0	108.6
	t+6	10.8	42.3	25.2	8.8	26.8
근로시간	t-2	13.3	42.4	24.4	9.2	27.6
	t-1	16.4	47.6	36.8	5.4	31.7
	t	29.6	47.5	39.3	2.3	34.9
	t+1	38.5	45.3	39.7	0	35.9
	t+2	37.7	49.5	53.9	0	39.5
	t+3	26.6	46.4	33.8	10.4	34.0
	t+4	35.0	47.5	39.7	5.8	36.9
	t+5	32.6	46.7	43.4	5.8	36.3

3.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앞서 제시한 노동시장 진입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았다(<표 9>).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례수가 가장 많은 집단을 종속 변수의 기준변수로 선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형2를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우선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보면, 최종모형의 -2LL이 172.002로서, 이것은 널모형(null model)보다 112.022만큼 향상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2(지속적 취업)-유형1(해체후 불안정 노동)’, ‘유형2(지속적 취업)-유형3(지속적 불안정 노동)’, ‘유형2(지속적 취업)-유형4(지속적

미취업)’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1개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유형2(지속적 취업)와 유형1(해체후 불안정 노동) 간의 차이를 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1은 해체 이전에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해체를 계기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으로 집단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3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유형2보다 유형1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결혼해체 이전에 미취업상태일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보다 유형2가 아니라 유형1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형1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양육해야 할 아동기 자녀가 있는 경우 해체 이전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해체로 인하여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형2(지속적 취업)와 유형3(지속적 불안정 노동)의 차이를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자면, 이 모형에서는 유일하게 해체 이전에 미취업 상태일 경우 유형2에 비해 유형3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2(지속적 취업)와 유형4(지속적 미취업)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형2에 비해 유형4가 될 확률이 높았고, 여성 개인의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유형4가 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다음으로 해체 이전에 미취업상태였을 경우, 그리고 빈곤하지 않았던 경우 유형2에 비해 유형4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형4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해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소득을 벌어들일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즉 평균 임금수준이 낮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양육해야 할 아동기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건대, 해체로 인하여 외부 충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즉 해체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평균 임금이 높으며, 양육해야 할 아동기 자녀가 없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성 개인의 교육수준은 여성의 고용패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결혼해체 전후 고용배열의 영향요인(기준: 유형2-지속적 취업)

		B	S.E	Wald	Exp(B)
유형1 “해체후 불안정 노동”	상수	-5.961	3.053	3.813 +	
	연령	.096	.056	2.945 +	1.100
	교육년수	.130	.126	1.072	1.139
	평균임금	-.005	.004	1.224	.995
	해체전 미취업	4.440	.949	21.881 ***	84.797
	해체전 비빈곤	.291	.677	.185	1.338
	해체전 무자녀	-1.452	.790	3.381 +	.234
유형3 “지속적 불안정 노동”	상수	.790	2.899	.074	
	연령	-.054	.053	1.015	.948
	교육년수	.046	.146	.100	1.047
	평균임금	-.002	.005	.220	.998
	해체전 미취업	1.774	1.051	2.849 +	5.894
	해체전 비빈곤	.030	.684	.002	1.030
	해체전 무자녀	-.701	.743	.890	.496
유형4 “지속적 미취업”	상수	-17.327	6.805	6.482 *	
	연령	.261	.105	6.149 *	1.298
	교육년수	.306	.202	2.286	1.358
	평균임금	-.041	.014	8.521 **	.960
	해체전 미취업	6.563	1.561	17.674 ***	708.740
	해체전 비빈곤	4.428	1.957	5.120 *	83.774
	해체전 무자녀	-2.280	1.358	2.821 +	.102

Nagelkerke .687 / X2 112.022*** / -2LL 171.002

+ p<.1 * p<.05 **p<.01 ***p<.001

V. 결론.

결혼해체는 결혼과 동시에 임금노동에 대한 축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에서 다각도의 위기를 유발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증폭시키거나, 혹은 완화시키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해체를 전후한 여성의 고용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변화나 빈곤, 사회적 배제 등 드러난 문제에 국한하여 분석을 수행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이들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고용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장기간의 시간창(time window)을 두어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해체를 전후하여 고용지위가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유사성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여성에게는 어떤 특성과 요인들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분석의 과정에서 해체를 전후하여 9년의 시점을 추적함에 따라 기존의 연구들이 대략적으로 3년간의 시간창을 두었던 것에 반해 분석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변화과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해체 3년전부터 매년 5%포인트씩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취업이 여성에게 결혼해체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바이다. 더불어 해체를 전후한 고용률의 증가폭은 빈곤여성에게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취업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해체를 전후하여 주당 평균 9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셋째, 해체를 전후한 여성의 고용지위 변화는 크게 네 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그룹은 해체 이후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유형, 분석기간 9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유형, 해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상태에서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유형,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는 유형이었다. 넷째,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속적 취업에 비해 해체후 불안정한 노동을 하거나, 혹은 해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미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더불어 여성의 개별임금수준이 낮을 경우 역시 지속적인 미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은 해체를 기점으로 가구의 주된 생계부양자의 상실을 경험하고, 동시에 본인이 주된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상황에 당면하는데, 이 때 여성의 임금은 생계부양자라고 명명하기에도 곤란한 저임금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은 여성을 지속적 취업이 아니라 지속적 미취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체 이후 여성의 불안정 노동과 빈곤,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의 취업을 결정하고, 고용지속성을 높이며, 소득증가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 결혼해체로 손상된 모성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 국가의 보육체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외연구에서도 동일한 결혼해체를 경험했다라도 국가의 보육정책에 따라 여성의 고용양상이 상이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와 동거하는 상황은 여성의 지속적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에게 해체의 부정적 효과가 증폭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충분한 보육정책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상 무상보육이 도입됨에 따라 이전보다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저소득 여성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수적인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시간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숙. 2009. 이혼율 현황과 국제비교. 보건복지 ISSUE & FOCUS, 12,
- 김수완. 2010. “결혼해체 이후 삶의 변화: 경제적 상태와 생활만족도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여성학』, 26(1), 35-67.
- 김순남. 2009. 성별화된 이혼의 서사: 상실의 경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41-72.
- 김정현. 2012. 저소득 이혼여성의 빈곤화 과정: 가족제도와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69-102.
- 김종숙 · 이지은. 2012. “PSM 방식을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손실 추정.” 『여성연구』, 82(1), 75-101.
- 김태홍 · 양인숙 · 배호중 · 금재호 · 이상준. 2012.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 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선 · 김은하. 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19-242.
- 김혜영 · 변화순 · 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김혜원. 2011. “여성의 경력단절과 임금 손실.” 『경제발전연구』, 17(2), 181-210.
- 노혜진. 2012. “한국사회 빈곤의 여성화: 개념의 확장과 재검토.”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혜진 · 김교성. 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67-196.
- 박경하. 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과정 유형화 연구: 다양성과 불평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 정익중. 2012. 이혼, 별거 전후의 소득변화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논총, 203-232
- 오은진 · 김난주 · 엄채운. 2012.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 진단 및 경력형성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우혜봉. 2010. 한국인의 성별 및 교육수준별 이혼 패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4), 139-163.
- 이현송. 2008.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161-185.
- 장은진 · 석재은. 2011. 결혼해체 이후 중장년 여성가구주의 적응 유형에 관한 중단 사례연구: 사회복지정책, 38(3), 159-190.
- 한준. 2001. “최적일치법을 이용한 남녀간 직업 배열의 분석.” 『노동경제논집』 24(1): 149-176.
- 허명희. 2009. 『SPSS Statistics 결측값 분석과 다중대체』 데이터솔루션.
- Abbott, A. and Tsay, A. 2000. “Seque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Methods in Sociology: Review and Prospec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1): 3-33.
- Andreß, H.-J. & Bröckel, M.(2007),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after marital disruption i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 pp.500-512.

- Avellar, S. & P. Smock. 2005.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dissolution of cohabiting un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315-327.
- Bedard K., and Deschenes, O. 2005. Sex preferences, marital dissolution, and the economic status of wome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 411-434.
- Brzinsky-Fay, C., Kohler, U. and M. Luniak. 2006. "Sequence Analysis with Stata." *The Stata Journal* 6(4): 435-460.
- Covizzi, I. (2008). Does union dissolution lead to un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health and risk of unemployment for women and men undergoing separ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3), 347-361.
- Euro Stat. 2011. Eurostat Yearbook.
- Gadalla, T., 2009.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men's and women's incom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50: 55~65.
- Isen, Adam and Betsey Stevenson. 2010. "Women's Education and Family Behavior: Trends in Marriage, Divorce, and Fertility." *Working Paper 1572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ansen, M., Mortelmans, D., & Snoeckx, L. 2009. Repartnering and (re) employment: Strategies to cope with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artnership diss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271-1293.
- Manting, D. & A. Bouman. 2004. "Short and long 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union dissolution". *The Case of Netherlands. 3rd European. Conference. Research Network on Divorce*.
- McKeever M. & N. Wolfinger. 2001. "Reexamining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ruption for women". *Social Quarterly* 82(1): 202-217.
- Mueller, R. D. 2005. The effect of marital dissolution on the labour supply of males and females: Evidence from Canad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4: 787 - 809
- Raeymaeckers, P., Snoeckx, L., Dewilde, C., and Mortelmans, D. 2008. The influence of formal and informal support systems on the labour supply of divorced mothers. *European Societies*, 10, 453-477.
- Tamborini, C. R., Iams, H. M., & Reznik, G. L. (2012). Women's earnings before and after marital dissolution: Evidence from longitudinal earnings records matched to survey dat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3(1), 69-82.
- Uunk, W. 2004.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divorce for women in the European Union: the impact of welfare state arrangement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251 - 285.
- Van Damme, M., Kalmijn, M., & Uunk, W. (2009). The employment of separated women in Europ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5(2), 183-197.